파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 - 26호

2025년 파주시 감사관(개방형직위) 임용시험 공고

2025년 파주시 감사관(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12월 17일

파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 직위 및 개요

채용예정 직위	채용 직급	선발 인원	임용 기간	주 요 업 무 내 용
감사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일반임기제 (개방형5호)	1명	2년	**< 감사관실 업무 총괄 >** ○ 감사종합계획, 자체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 ○ 공무원 비위 예방 및 조사·처리 ○ 사업의 집행계획·계약·집행 타당성 점검 및 심사 ○ 언론보도사항의 조사 및 처리 ○ 공무원 징계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 외부감사에 대한 수감 및 처분요청사항 처리 ○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 그 밖에 감사 및 조사, 기술감사 관련 사항 등

※ 계약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최대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임용신분

❍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 승진, 전직 등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 민간인의 경우에는 임용약정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근무기간동안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신분유지

3 응시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기본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성별 제한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자격요건(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자격 및 경력 요건 기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6조)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관련업무(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2)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나.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③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응시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해당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

바. 삭제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 제15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될 수 없다. 1.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지면 그 직에서 교체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업무 관련성의 범위)>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감사기구의 장으로 임용되려는 사람이 근무했던 법인 또는 단체를 퇴직하기 전 2년 이내에 수행한 업무가 임용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의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의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 등의 업무 4. 조세의 조사, 부과 및 징수 업무 5.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등의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을 하는 업무

5 시험일정

❍ **모집공고 : 2025. 12. 17.(수) ~ 2025. 12. 28.(일)**

※ 공고 게시장소 : 홈페이지 (파주시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원서접수 : 2025. 12. 29.(월) ~ 2026. 1. 5.(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2026. 1. 8.(목) 예정

❍ 면접시험 : 2026. 1월 중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2월 초

※ 상기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시험방법

❍ 1차 서류심사(형식요건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함
-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고,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 유효기간의 도과 여부 등을 확인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7배수 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적격성 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개별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건을 검증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에서 두루 능력을 갖춘 자를 선발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5. 12. 29.(월) ~ 2026. 1. 5.(월) (5일간)**

❍ 접 수 처 : 파주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본관 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방문접수 : 파주시청 본관2층 행정지원과 인사팀 >
- 접수기간 내 민원여권과에 응시수수료(**1만원**) 납입 후 접수처에 방문접수 또는 대리접수 가능 - 09:00~18:00 접수, 접수마감일 18:00 이후 접수 불가 - 주말·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 등기접수 >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우편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누락방지를 위해 **접수사실을 반드시 담당자(031-940-4126)에게 전화로 고지하여야 함**

※ 보내실 곳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본관2층 행정지원과 인사팀 채용담당자
- 우편봉투 겉면 **'2025년 파주시 감사관(개방형직위) 응시원서'** 문구 표기
- **응시분야 직급의 응시수수수료(1만원) 상당 금액의 통상환증서를 우체국에서 구입 후 동봉**
※ 정부수입인지 제출 불가하며 우편통상황은 금융업무로 마감시간 유의
- 등기우편 접수자 응시표는 이메일 통보하므로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 서류 미비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공고내용을 빠짐없이 체크하여 서류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
-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하며 가급적 빠른 등기우편으로 송부

❍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비 고
1. 응시원서	- 응시수수료 납부 후 제출 · (방문접수) 파주시청 민원동 1층 민원여권과에서 수수료 납부 후 행정지원과 인사팀 제출 · (등기접수) 우편통상황 구입 후 동봉 발송(**1만원**)	필수 (별지1호)
2. 이력서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불인정)	필수 (별지2호)
3. 자기소개서	- A4용지 3매 이내	필수 (별지3호)
4. 직무수행계획서	- A4용지 3매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하되, 정책(사업) 목표, 추진전략 등이 포함되도록 자성	필수 (별지4호)
5. 동의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필수 (별지5호)
6.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 해당하는 자격요건에 표시하며 중복표시 가능	필수 (별지6호)
7. 자원봉사활동 자기기술서 및 확인서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 자원봉사 실적	해당자 (별지7호)
8.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 모두 제출하고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해당 졸업증명서 제출	필수
9. 경력증명서	- 최근 **1년 이내 발급한 원본** 제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 - **발행기관의 직인 및 발급담당자 성명과 날인, 연락처 기재 필수**	필수

9. 경력증명서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 - **비상근(시간제근무) 또는 비정규직 경력은 반드시 근무기간별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정규직 또는 상근직의 경우 주당근무시간 또는 근무형태 명시)** - 프리랜서 등 근무기간·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입증자료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 회사 자체 경력증명서 양식 상 위 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을시 **반드시 해당 경력증명서 발급확인자 수기기재·서명**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추가 증빙자료 제출 - 직장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 불가시 기존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서 등 추가 증빙서류 제출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의 효력 불인정 - 시간제 근무의 경우 주40시간 기준 근무시간 비례하여 경력인정함	필수
10.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보험가입 전체기간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경력증명서 내용과 불일치 시 상근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추가증빙서류(급여내역서 등) 제출	필수
11. 관련 자격증	- 사본 제출가능하나 **원서 제출시 원본 지참**	해당자
12. 연구실적 등	- 학위·연구 논문 사본, 연구실적 목록 등	해당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기재 -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서류 미제출시 인정 불가** - 제출서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공증**하여 제출 - 경력의 계산, 학위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임	

8 보수수준

- 경력직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지급
- 임기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자격 및 경력사항 등을 고려하여 책정함

임용직급	연봉상한액	연봉하한액
개방형 5호(5급상당)	90,629천원	51,513천원

-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9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 관련 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위·변조 등 부정행위로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하며,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와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학력·경력·자격 증명서를 원본으로 제출한 경우 본인이 요청하면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반환해 드립니다.(합격자는 반환하지 않음)

-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 내부 응시자만 있는 경우,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복무 및 보수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을 적용합니다.
- ❍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파주시 행정지원과 인사팀(☎031-940-4126)으로 문의 및 홈페이지(www.paju.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